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2017. 3. 3.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권은혜

▣ 산업재해 현황

❖ 연도별

구분 <전국>	'06	'09	'12	'15	'16
재해율(%)	0.77	0.70	0.59	0.50	0.49
재해자수 (사고)	89,910 (79,675)	97,821 (89,100)	92,256 (84,784)	90,129 (82,210)	90,610 (82,782)
사고 사망만인율(‰)	0.96	0.82	0.73	0.53	0.53
사망자수 (사고)	2,238 (1,117)	1,916 (1,136)	1,864 (1,134)	1,810 (955)	1,777 (969)

※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16년 12월 잠정통계 기준, 사업장수와 근로자수는 16년 11월 공식통계 기준임

❖ 사업장 규모별

구분 <전국>		'11	'12	'13	'14	'15	'16
전체	재해율(%)	0.65	0.59	0.59	0.53	0.50	0.49
	사고 사망만인율(‰)	0.79	0.73	0.71	0.58	0.53	0.53
50인 미만	재해율(%)	0.98	0.89	0.86	0.76	0.71	0.70
	사고 사망만인율(‰)	1.07	1.00	0.89	0.74	0.68	0.67

- 5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는 '16년 4.7배
 (50인 미만 0.70 / 300인 이상 0.15)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16년 74,183명으로 전체의 81.9% 차지
 〔50인 이상 사업장(16,427명) 대비 4.52배 많음〕

❖ 창원지청

구 분	2016년			2015년		
	제조업 (점유율)	건설업 (점유율)	서비스업 분야 (점유율)	제조업 (점유율)	건설업 (점유율)	서비스업 분야 (점유율)
사업장수	12,630 (21.7%)	9,606 (20.5%)	32,488 (55.2%)	12,700 (21.1%)	13,040 (21.7%)	31,202 (51.9%)
근로자수	178,723 (34.7%)	113,141 (22.0%)	161,834 (31.4%)	176,608 (36.9%)	113,401 (23.7%)	151,131 (31.6%)
사고성 재해자수	952 (42.9%)	540 (24.3%)	520 (23.4%)	986 (44.1%)	538 (24.1%)	527 (23.6%)
사고성 사망자수	11 (35.5%)	15 (48.4%)	3 (9.7%)	13 (40.6%)	16 (50.0%)	2 (6.3%)
재해율	0.64%	0.42%	0.36%	0.66%	0.49%	0.39%

- 2016년 **전국 재해율 : 0.49%, 창원 재해율 : 0.49%** (2015년 0.53%)

※ 전국 근로자수 18,407,658명(사업장수 2,433,191개), 재해자수 90,610명

※ 창원 근로자수 514,747명(사업장수 58,252개), 재해자수 2,510명

▣ 2017년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정기, 기획, 예방, 특별 감독)

- 정기감독시 1회 방문으로 종합감독 실시

※ 유해·위험요인이 유사한 감독 통합, 대상이 중복되거나 병행이 가능한 경우 병행 감독

특별관리물질 취급사업장 감독 허용기준 유해인자 취급사업장 감독 MSDS 경고표시 이행실태 감독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감독
작업환경관리 취약사업장 감독 소음관리 취약사업장 감독	⇒	작업환경관리 취약사업장 감독

- 감독은 원칙적으로 불시감독으로 실시

- 재해 다발 작업에 대한 기획감독 확대

※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 기타 자체 기획감독

〈자율재해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감독 유예 대상〉

연번	사업명	유예범위
1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집무규정 제1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감독 중 건강증진 및 건강진단 분야
2	위험성평가 인정	집무규정 제1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감독
3	공생협력 A등급	
4	안전경영대상 수상	
5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승인 (원하청 상생협력, 자율안전컨설팅)	
6	환산재해율 우수건설업체	
7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우수업체	

❖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

- 집중관리 및 관심관리 실시

※ 건설·조선·화학·철강업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관이 사업장의 정비·유지보수작업, 건설현장의 주요 진행공정 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위험작업 시 적시에 감독·점검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조치 강화

- (전면)작업중지 → (특별·정기)감독 → 안전보건진단· 개선계획수립명령 등을 패키지로 조치

❖ 소규모 사업장 집중관리(기술지도)

-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미흡한 50인 미만(건설업은 3억원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가 다발하는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방문지도를 통한 재해예방 종합컨설팅* 실시, 감독 연계 강화

* 기술지도시 교육지원 및 재정지원(클린, 융자) 등과 연계

- 안전분야 : 지게차, 천장크레인, 프레스, 컨베이어 등에 의한 사고성 재해발생 사업장(`16년도) 또는 다수 보유 사업장
- 보건분야 :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성 질환자 발생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또는 초과가능사업장
- 화학분야 :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있는 제조업 사업장
- 서비스분야 : 3인 이상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음식업(타업종 단체급식소 포함) 사업장 중 중위험군 이상(전년도 사고성 재해 발생사업장 등) 사업장
- 건설분야 : 재해가 다발하는 3억원 미만 영세규모 건설현장 및 영세규모 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 위험성평가 제도 운영

- 사업장 점검·감독시 위험성평가 실시여부를 우선 점검하여 미실시 사업장은 실시토록 지도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이행여부 확인하고 산안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행·사법 조치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원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협력업체 재해 감소 및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의식 강화

- 사회적 이슈가 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및 사고 다발 사업장은 사업 중점 참여 유도

- 유해·위험물질(134종)* 취급 사외 협력업체는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

* 유해·위험물질 134종: ①공정안전보고서(PSM) 적용 물질(51종)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사용, ②고독성(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78종), ③최근 10년간 직업병 발생 빈도가 높은 삼산화안티몬, 클로로포름, 시안화수소, 메틸알코올,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5종)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강화

- 사업장 감독시 법 제4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유소견자)에 대한 사업주의 적정한 조치 여부 확인

 ·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개선, 야간근무 제한 등 그 밖의 적절한 조치

 ·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3호, 시행 2016.7.1.]

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2항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강화

- 서비스업 및 적응장애·우울병에피소드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실태점검 실시

 ·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음.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적 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

 · 감정노동자(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 발생시 산재로 인정받게 됨(2016.3.28.시행).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후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적, 행동적 반응

 **의욕저하와 우울감이 주요 증상,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

-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다수 고용업종을 대상으로 조직차원의 예방체계 구축 지원 및 근로자 교육 실시

❖ 작업환경측정 모니터링 강화

-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발굴 확대

-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측정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 측정 실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화학물질 사용 실태조사표 작성, 작업환경측정 의무 이행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측정 제도 안내)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측정) 20인 미만 사업장

- (특검) 1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근로자, 건강관리수첩소지자

▣ 2017년 변경되는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변경(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시행령 제8조의4)

현 행	개 정(2017.01.01. 시행)
①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②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 -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도급인인 사업주가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①, ②,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함께 공표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정기회 부여(2017.01.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 ·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 · 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시행일]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4.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호, 2017.01.19. 시행)

산업안전 · 보건교육규정 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사업주가 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 · 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산업안전 · 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 현장밀착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TBM(Tool Box Meeting) · 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산업안전 · 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③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61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 · 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01년 23.8% → '14년 33.4%)

- 특히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비스업 전체 평균 재해율 보다 높음에도 산업안전교육 관련 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있음

※ 최근 3년('12~'14년)간 서비스업평균재해율 0.39, 도매업 0.40, 숙박및음식점업 0.69

❖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되,

- 신규 규제임을 감안하여 기준교육 시간의 1/2이상 실시하도록 함.

- 3년간의 규제 재검토 기간 설정(2018.12.31.까지)

- 2016.08.18.부터 시행

6.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인정(시행규칙 별표 8, 2016.10.28. 시행)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7.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대상 추가(시행령 제28조의6)

현 행	개 정(2016.08.18.부터 시행)
3.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3.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3.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2017.10.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검사는 누가?** 사용 사업주 / 소유자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8.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대상 추가(시행령 제28조의6)

현 행	개 정(2017.10.28.부터 시행)
1. 프레스 2. 전단기 … 13. 고소작업대	1. 프레스 2. 전단기 … 13. 고소작업대 **14. 컨베이어** **15. 산업용 로봇**

-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은 20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9. 안전검사 면제(법 시행규칙 제73조, 2016.10.28. 시행)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10. 도급인이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장소 확대(시행규칙 제30조제4항)

현 행	개 정(2017.01.02. 시행)
1. 토사 · 구축물 ·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20. 전기 기계 · 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 ... 20. 21.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2.「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정보 제공 확대(법 제29조제5항, 시행령 제26조제4항, 2017.01.07. 시행)

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 · 보건 조치)

③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 ·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를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 증류탑 · 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2017년에 추가 예정(2016.12.27. 국무회의 통과)

시행규칙 제30조의4(안전 · 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전자문서에 의한 제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 · 위험성
2.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 · 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변경(시행규칙 별표 12의2)

현 행(2016년 전 사업장 대상)	개 정(2016.02.17. 시행)
4. 야간작업(1종)	4. 야간작업(1종)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 최소 5시간(이 경우 밤 12시부터 오전 5시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상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현행과 같음)

❖ 사업장별로 시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야간근무를 월 평균 4회 이상 하더라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음.

※ 시업시간이 22:30, 23:00, 23:30, 24:00으로 탄력적으로 운영(5개 국립대병원)

❖ 2016.02.17.부터 시행

1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변경(2016.08.18.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노출값(STEL)
	ppm	mg/㎥	ppm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0.05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현행 0.5) 0.2	
3. 디메틸포름아미드	10		
4. 벤젠	(현행 1) 0.5		2.5
5. 2-브로모프로판	1		
6. 석면		0.1개/㎤	
7. 6가크롬 화합물 불용성		0.01	
7. 6가크롬 화합물 수용성		0.05	
8. 이황화탄소	(현행 10) 1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현행 0.03) 0.01 (호흡성 분진인 경우 0.002)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0.005		0.02
11. 트리클로로에틸렌	(현행 50) 10		25
12. 포름알데히드	(현행 0.5) 0.3		
13. 노말헥산	50		

※ 화학물질 6종의 허용기준 값을 국제수준과 부합하게 개정

14. 이륜자동차 운행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

현 행	신 설 (2017.03.03.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생 략) 1. ~ 9. (생 략)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 ⑩ (생 략)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15.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신설

신 설 (2017.03.03.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3.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6. 방사선투과검사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 지급 의무 신설

신 설 (2017.03.03.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74조 ② 사업주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3호의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2. 방사선 경보기

17. 밀폐공간 개념 확대

현 행	개 정 (2017.03.03.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정의) 1. "밀폐공간" 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 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정공기" 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정의)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18. 밀폐공간 장소 확대

현 행	개 정 (2017.03.03.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 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19. 밀폐공간 작업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의무 명확화

현 행	개 정 (2017.03.03.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43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작업장의 환기, 송기마스크등*의 지급·착용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관리대상 유해물질 4개 추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유기화합물 확대(112종 → 116종)

- 유해성의 증거가 충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직업병 감소효과가 큰 4개 물질 추가

❖ 추가 물질 4개

-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 브이엠 및 피 나프타
- 2-클로로-1, 3-부타디엔
- 페닐글리시딜에테르

21. 특별관리물질 확대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확대(16종 → 36종)**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 상향 조정

1. 디니트로톨루엔(신규)	13. 아크릴아미드(신규)	25. 포름알데히드
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신규)	14. 2-에톡시에탄올(신규)	26. 프로필렌 이민(신규)
3. 디메틸포름아미드(신규)	15.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신규)	27. 하이드라진(신규)
4. 2-메톡시에탄올(신규)	16. 에틸렌이민(신규)	28. 황산디메틸(신규)
5.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신규)	17. 2,3-에폭시-1-프로판올(신규)	29. 납 및 그 무기화합물
6. 벤젠	18. 1,2-에폭시프로판(신규)	30.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7. 1,3-부타디엔	19. 에피클로로히드린	31. 수은 및 그 화합물(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제외)(신규)
8. 1-브로모프로판	20. 이염화에틸렌(신규)	32.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9. 2-브로모프로판	21. 1,2,3-트리클로로프로판(신규)	3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사염화탄소	22. 트리클로로에틸렌	34.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11. 스토다드 솔벤트(신규)	23. 퍼클로로에틸렌(신규)	35. 황산(pH 2.0 이하인 강산)
12. 아크릴로니트릴(신규)	24. 페놀	36. 산화에틸렌

※ 특별관리물질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국소배기장치 등 관련 법조항 적용 제외 규정 미적용

22. 기타 시행 예정 규정

❖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부과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출퇴근 시 업무상재해 인정 범위 확대

- 현행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 인정
- 2016.9.29. 헌법재판소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 현행규정은 2017.12.31.까지 적용